

의안번호	2205122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4.11.15
추 계 번호	24B474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 주기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원, 2029년 4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8억원(연평균 1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안 제25조의3 신설)	400	—	—	400	—	800	16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이하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이 때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기와 상시조사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1. 국토·토지 환경에 관한 사항 2. 국토·토지 여건 및 정책 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 (추계) 국토교통부 제출안을 바탕으로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정기와 상시조사로 이원화하여 실시하고 공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정기조사와 상시조사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 다만, 국토연구원이 2022년에 실시한 “토지정책 기초조사” 시행 사례를 참고하여 3년마다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할 수 있음
 - － 국토연구원은 2022년에 ‘토지정책 기초조사’를 실시(토지정책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토지정책 수요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종합연구로, 국토연구원 자체 연구사업 소요예산 기준에 따라 책정된 예산)¹⁾
 - － 이는 토지분야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연구비가 포함된 비정기적 조사사업²⁾으로, 소요 예산 중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시행을 위한 1회차 조사 설문 설계비용

1) ‘2022년 토지정책 기초조사’는 전국민 대상 2,500부, 온라인 조사

* 조사기획 및 항목 설계 등 연구인건비(박사급 1인, 석사급 1인 : 70백만원)

* 전문조사업체 조사용역 의뢰비(2,500명 표본, 온라인 : 60백만원)

2) 국토연구원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대국민 설문조사로 실시하면서,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 비정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음.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03년 한국갤럽과 함께 1,300명을 대상으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과 전문리서치 기관의 용역위탁 비용 단가를 참고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때 소요비용으로 유사사례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정
 - 개정안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대상은 ‘국토·토지 환경에 관한 사항’, ‘국토·토지 여건 및 정책 변화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민의식조사’로 규정
 - 국토교통부는 유사사례 ‘토지정책 기초조사’ 사업비와 최근 부처에서 실시한 유사 국민의식조사 사례³⁾를 참고하여 4억원 소요 예산을 산정함
 - － 조사기획 및 항목 설계 등 연구인건비(박사급 1인, 석사급 2인 : 100백만원)
 - － 전문조사업체 조사용역 의뢰비(1만명 표본, 면접조사, 시군구 층화추출: 300백만원)
- 개정안에 따라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원 등 5년 동안 8억원(연평균 1억 6,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년~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400	—	—	400	—	800	1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농림식품축산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전문기관 용역비(7,500만원, 5천명, 온라인 패널조사)
법제연구원: 2023년 국민법의회식 실태조사 용역(1억 5천만원, 3,400명, 면접조사)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토교통부가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